

Issue & Opinion

EU, NFRD 개정안인 CSRD 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선경 본부장

Sunkuoung.lee01@daishin.com

02-769-3108

박재영 선임연구원

jaey.park@daishin.com

02-6711-9640

Summary

- 지난 4월 21일 유럽의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에 대한 개정안(CSRD)이 발표됨.
- EU는 2014년 비재무적 및 다양성 정보공시에 관한 지침(2014/95/EU)을 도입하고 2018년부터 임직원 500인 이상의 대기업 등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 공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음.
- 그러나, 1) 표준화된 공시 기준 부재로 인한 정보의 비교 가능성 및 활용성 부족, 2) 비재무정보 공시의 중요성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증대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음.
- 개정안인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의 핵심은 1)의무 정보 공시 대상 및 내용의 전면 확대, 2)정보의 신뢰성, 비교성, 접근성 제고(표준화 Tool 적용과 공시 내용에 대한 감사 등), 3)대기업과 중소 기업간 부담의 차별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개정안은 2021년 상반기 중 법안이 최종 채택될 예정임. 한편, 이와 연계해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기업 규모별 유럽연합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을 개발 중이며, 두 단계에 걸쳐 표준 발표·채택을 예정하는 등 지속가능 정보 공시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최근 국내에서도 ESG 관련된 제도 도입이 활발한데 주로 지표의 표준화가 중심이고, 지표의 '측정'을 위한 정보 기준의 정립 및 공시 확대 등 공시정보 표준화에 대한 논의는 미흡함. 결국 지속가능한 정보의 활용은 중요한 지표의 설정과 이를 공시하는 기준의 표준화가 병행되어야만 가능해 국내에서도 해당 논의가 필요함.
- 향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사업 확장 등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내실정 등을 감안하되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 표준화 논의가 시급하며 속도전 보다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CSRD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1. 의무 정보공시 대상 및 내용의 전면 확대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의 경우, 공익실체(public interest entities)로 임직원 500인 이상이면서 순매출이 4천만유로 이상이거나 순자산 총액이 2천만유로 이상인 상장 대기업 등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CSRD에서는 초소형 기업을 제외한 모든 상장 기업과, 비상장 대기업, EU 역내 상장된 외국 법인 등으로 대상이 크게 확대됨.

EC(유럽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에 따라, NFRD 적용시 11,600여개였던 대상 기업수가 CSRD 적용시 49,000여개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됨.

보고 내용 또한 기존 주요 5개 주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회사 정책(실사 과정 포함), 정책 시행 결과, ESG 리스크 및 관리 방안, 특정 사업에 따른 비재무 KPI의 공시에서, 개정안은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에서 경영진의 역할, 정책, 지속가능성에 가장 중요한 부정적 요소, 정보 식별 방법 등 요구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보다 구체적인 카테고리를 지정하고 있음.

[참고: EU의 지속가능 정보공시에 따른 기업 구분 기준]

EU 기업분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 충족시 해당
대기업	연평균 임직원 250명 이상, 순매출액 4천만유로 이상, 순자산총액 2천만유로 이상
중기업	연평균 임직원 250명 미만, 순매출액 4천만유로 미만, 순자산총액 2천만유로 미만
소기업	연평균 임직원 50명 미만, 순매출액 400만유로 미만, 순자산총액 800만유로 미만
초소형 기업	연평균 임직원 10명 미만, 순매출 70만유로 미만, 순자산총액 35만유로 미만

출처: 유럽집행위원회

2. 정보의 신뢰성, 비교성, 접근성 제고

보고된 내용에 대해 감사가 필요함이 포함되어, 정보의 공신력에 대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다만 초기에는 제한된 감사 수준으로 진행하되 궁극적으로 회계감사에 준하는 수준의 감사를 규정함.

또한, 세부적인 정보 공시 방식은 22년 10월, 23년 10월에 걸쳐 제정될 1, 2차 EU 지속가능 보고 기준에 맞추어 보고되게 됨에 따라 기업 간 비교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정보를 표준화시켜 공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디지털 방식으로 수집 및 판독이 수월하도록 태그를 달고, 유럽의 단일 기업정보 플랫폼인 ESAP(European Single Access Point)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정보 활용의 편의성을 크게 제고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NFRD와 CSRD 주요 내용 비교]

항목	NFRD	CSRD
적용대상	- EU 역내 임직원 500인 이상의 상장 대기업 및 공익실체 • 상장된 대기업 • 은행과 보험(상장여부 불문) • 기타 정부기관에 의해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기업	- 상장·비상장 대기업 전체(임직원 250명 이상) - EU 상장의 경우 중소기업도 대상(상장된 초소형 기업은 제외) - EU 역내 상장된 외국법인도 대상에 포함
보고 내용 및 방법	- ▲환경 보호 ▲직원 대우 및 직원의 사회적 책임 ▲인권 존중 ▲반부패 및 뇌물방지 ▲이사회 다양성의 5개 주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회사 정책(실사 과정 포함), 정책 시행 결과, ESG 리스크 및 관리 방안, 특정 사업에 따른 비재무 KPIs	-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 ▲목표 및 성과 ▲경영진/자문 역할 ▲가장 중요한 부정적 영향, ▲주요 지속가능 리스크 ▲앞서 나열된 요소 측정을 위한 지표(indicators) ▲지적, 인적, 사회적, 관계 자본에 대한 정보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정보 식별 절차 등을 보고해야 함. -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감사(보증; assurance)가 필요하며 EU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개발 중)에 따른 보고요구
보고 양식	- 기본 보고 양식은 경영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식이나 각국에서 법제화 시 별도 보고서 발간 등을 규정할 수 있음.	- 기본 보고 양식은 경영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식 - 보고 내용에 디지털 태그 요구 (기계 판독 가능 및 유럽 단일 액세스 포인트에 보고 등 접근성 제고 목적)
기타		- 2022년 상반기 중 법안 최종 채택 예정 - 중소기업의 경우 2026년부터 공시 적용되며 대기업 대비 간소화된 지속가능성 표준화 기준이 제시될 예정

출처: 유럽집행위원회

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부담의 차별화

개정안이 유럽 의회와 이사회를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최종 채택되면, 2024년부터 FY2023에 대해 유럽지속가능 보고 1차 표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적용대상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후, 2차(최종) 유럽지속가능보고 표준에 따라 2026년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적용대상이 FY2025에 대한 지속가능 정보를 제공해야 함.

중소기업의 경우, 비상장에 대해서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초소형 기업은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충분한 대비 기간을 주기 위해 법안이 최종 확정 후 3년 지난 후부터 (현재 예상 2026년 1월) 의무가 적용됨.

한편,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보고 표준은 중소기업의 지배구조, 조직, 자원 등의 특성을 고려해 대기업과는 별도의 지속가능 보고 표준을 적용하는 등 기업 규모 대비 커질 수 있는 부담 요인을 반영할 계획임.

시사점

글로벌 환경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정보 표준 공시 제도 점검 필요

유럽은 일찍이 ESG를 반영한 책임투자와 ESG 관련 각종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키며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ESG 및 지속가능 금융 확대를 주도하고 있음. 특히 이번 CSRD 개정안의 내용 중 감사를 통한 공시 정보의 신뢰성 제고와 정보 공시 방식의 표준화 및 디지털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은 타국가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판단됨.

다만, 이러한 논의의 이해관계자들이 유럽시장 참여자 중심이라는 점에서 유럽의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 배경 등을 이해하고 참고하되, 우리만의 실정이 감안된 표준화된 ‘지속가능 정보 공시’ 양식과 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최근 논의된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의무화나 지표의 표준화가 된다 하더라도 정보공시 양식이 제각각이고, 파편화된 플랫폼에서 회사별 별도 수집해야하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표가 무엇인지 공개’된다는 의미 외 정보의 활용성과 비교 가능성 제고는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움.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주요국 정부의 탄소중립국 선언,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지속가능금융 확산을 위한 공급망 실사 강화 등에서 우리가 국가 및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의 관점보다는 ‘대응과 대책’의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속가능 정보 공시 제도의 정비를 통한 대비가 요구됨.

이는 절대 암기식 객관식 시험 통과와 같은 속도전이 되어서는 안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하며 국제사회에 우리의 실정과 노력을 제대로 알리고 협업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염두에 둔 정책 및 제도의 정비여야 할 것임.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주)대신경제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특정한 투자상담, 권유, 또는 광고 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당 연구소는 본 리포트에서 제공된 내용에 관하여 정확성 또는 예측의 실현여부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본 보고서를 분쟁 등에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 연구소의 동의 없이 이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